

오산시 자치법규안 예고

「오산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 및
「오산시의회 회의 규칙」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3년 8월 25일

오산시의회의장

오산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송진영 의원 발의)

1. 제안이유

- ‘고독사’의 정의를 ‘홀로 사는 사람(1인 가구)의 죽음’에서 ‘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의 죽음’으로 변경하여 고독사 위험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「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제19443호, 2023. 6. 13.)됨에 따라, 상위 법령의 개정 취지에 맞도록 해당 조례의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

2. 주요골자

- 가. ‘1인 가구’ 정의를 삭제하고, ‘고독사’ 등의 정의를 법령에 맞게 정비함
(안 제2조)
- 나. 지원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(안 제4조의2)

3. 조례안 : 붙임

4. 의견제출

- 제출기일 : 2023년 9월 4일까지
- 제출방법 : 서면, 우편, 오산시의회 홈페이지 등
- 제출서식 :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
(오산시의회 홈페이지>알림마당>입법예고>공지)
- 기재내용 : 주소, 성명, 연락처번호, 의견
- 제출기관 : 오산시의회(전문위원실)
 - 우편번호 : 447-701
 - 주 소 : 오산시 성호대로 141(오산동, 오산시의회)
 - 전 화 : 031)8036-8031, · 팩 스 : 031)3036-8953
 - 전자메일 : blue6017@korea.kr

오산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오산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오산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”를 “오산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오산시의”를 “고독사 예방과”로, “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하여”를 “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에”로, “사회적 고립가구”를 “시민”으로 한다.

제2조제1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1인 가구”를 “가구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“고독사”란 「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.

4. “고독사위험자”란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1인 가구의 사회적”을 “사회적”으로 한다.

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2(지원대상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.

1. 고독사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구성원

2. 건강상태, 경제상태,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및 가구
3. 행정복지센터, 지역사회보장협의체, 사회복지기관, 지역주민 등을 통해 발굴된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위험자
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위하여 오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인 가구(1인 가구를 구성하는 사람을 포함한다) 중 고독사 위험자 또는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”를 “위하여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오산시의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하여</u>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<u>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</u> 한다.</p>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1인 가구”란 한 사람이 홀로 <u>취사·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.</u></p> <p>2. “사회적 고립가구”란 가족, 이웃, 친구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 가는 <u>1인 가구를</u> 말한다.</p> <p>3. “고독사”란 가족, 친척 등 주변 <u>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·병사 등의 이유로 혼자 임종을 맞고, 시신이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</u> 말한다.</p> <p>4. “고독사 위험자”란 <u>경제적·신체적·정서적·사회적 문제로</u>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<u>고독사 예방과 -----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에 -----</u> ----- ----- <u>시민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<u><삭 제></u></p> <p>2. ----- ----- ----- <u>가구</u>-----.</p> <p>3. “고독사”란 「<u>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</u>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.</p> <p>4. “고독사위험자”란 <u>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사람을</u> 말한다.</p>

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오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고독사 위험자를 그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<신설>

제5조(사회적 고립등 예방을 위한 사업 등) ① 시장은 사회적 고립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오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인 가구(1

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-----
----- 사회적 --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4조의2(지원대상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.

1. 고독사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 가구의 구성원
2. 건강상태, 경제상태,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및 가구
3. 행정복지센터, 지역사회보장협의체, 사회복지기관, 지역주민 등을 통해 발굴된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위험자
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제5조(사회적 고립등 예방을 위한 사업 등) ① -----
----- 위하여 -----

인 가구를 구성하는 사람을 포함한다) 중 고독사 위험자 또는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

1. ~ 11. (생략)

② (생략)

-----.

1. ~ 11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